

# 성 북 구 인 권 위 원 회

## 결 정

제 목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권고

의안번호 제2015-9호

제 출 자 성북구 인권위원회

### 주 문

1.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구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평등한 참여를 위하여 별표 1의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 범위(제4조 관련)'를 사업명으로 명시하지 말고 분야별, 사업내용별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I. 권고의 배경

○ 이 조례에 의한 지방보조금은 성북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하는데,

○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 또는 별표1에 의한 보조대상사업 범위로 한정하려 하고 있다.

○ 그러나, 개정안의 보조대상사업 범위는 분야별 사업명(예를 들어 김장나눔 행사, 멘토링 사업, 동절기 조류 모이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신규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구정에 참여하려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어 구정 참여에 대한 기회와 균등 차원에서 인권침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 구체적인 사업명은 현재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의 신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지라도, 변화하고 있는 구정 여건에 맞게 사업의 내용을 바꿀 수 없게 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의 범위는 사업 분야의 내용을 좀 더 포괄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신규 참여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사업내용의 변화 가능성을 용이하게 하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II. 권고의 주요 내용

○ 별표 1의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 범위(제4조 관련)'를 분야별, 사업 내용별로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규참여자의 구정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사업 내용의 변화가능성을 확보할 것

## III.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5. 8. 25

성 북 구 인 권 위 원 회